I·SEOUL·U

2018년 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8.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8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16.(화) 10:00 ~ 11:35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심의위원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한상희, 행정국장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안　건 : 이의신청 2건

- (2018-4)서울특별시 00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자 선정 관련 협상서(안)
- (2018-5)2017년 11월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비정산비) 지급 관련 생활임금 적용시 추가비용 산출금액 등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인용
- 부분인용

【 의안번호 2018-4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서울특별시 00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자 선정 관련 협상서(안)

〈○○○ 위원〉

○ 오늘 심의회는 심의위원으로 권혜진 위원님, 안희철 위원님, 한상희 위원님, 황인식 위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이의신청 2건입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매 건마다 상정안건에 대해 간사가 보고를 드리고, 주심위원께서 해당안건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각 주심위원님들께서는 해당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결정안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고요, 의안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7명 중에 오늘 다섯 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안번호 제2018-4호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소관부서 팀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소관부서 주무관님은 소속, 직,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소상공인지원과 행정6급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4호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서울시 00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된 '협상서(안) 송부' 결재문서에 대해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결재문서 본문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붙임문서인 협상서(안)에 대해서는 타사의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이 유출 가능한 정보로 공개 시 해당업체에 영업상의 지위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시의 행정중립성 유지 차원에서 공개결정 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주무관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주무관〉

○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구인이 서울◇◇◇협동조합이고, 지금 새로 수탁기관이 서울◎◎◎협동조합인데 서울에는 이렇게 두 조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 주무관〉

○ 현재 서울시 내 9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2개의 조합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이 ◇◇◇협동조합은 애초에 민간위탁자로 있다가 지금 협약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된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면 다시 모집공고를 하고 경쟁을 통해서 ◎◎◎가 선정된 겁니까?

〈○○○ 주무관〉

○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4일 날 위·수탁 협약 완료를 했고, 원래 1월 1일자로 사업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인수인계 과정상 2주간 텀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인수인계가 완료가 되고 사업개시가 됐습니다.

〈○○○ 위원〉

○ 이 ◇◇◇협동조합의 협약 해지사유가 협약 위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주무관〉

○ 가장 큰 사유는 대기업 유통업체로부터 상생자금을 수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상생자금이라고 하면 상생협약법에 의해서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할 때 골목상권의 대표들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협상 주체가 기존 수탁자인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생자금을 받아 00센터에 운영자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조합차원에서 상생자금을 받았으면 회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골목수퍼를 위해서 쓰인다거나 해야 되는데, 00센터로 흘러들어 와서 차입금을 갚고, 상품 구매를 하고, 임금 지급에 회계 혼용이 된 것이 첫 번째입니다.

○ 다음으로 위·수탁협약, 민간위탁조례, 공유재산법에 보면 전대를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부터 전대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계속 해 왔고, 그것이 상생자금하고 맞물리면서 2016년도 지도점검에서 표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계 지도점검 하면서 기타 불거졌던 회계부정이나 노동계약법 위반 이런 사항들을 들어서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 애초에 협약사항에 협약 위반일 경우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 주무관〉

○ 우리 협약서에 해지사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는 확실합니다.

〈○○○ 위원〉

○ 이것이 소송까지 갔다가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하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1심 승소를 했고, 2심은 제기를 안 한다는 의향서에 법원에 제출해서 소송은 서울시 승소로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

○ 새로 ◎◎◎하고 체결하신 협상의 협상서가 '13년도에 체결한 ◇×◇와의 협상서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주무관〉

○ 당시에 협상서가 있었으면 참고를 했을텐데, 아마 협상자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 협약은 체결하셨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협약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협약서는 있죠.

〈○○○ 위원〉

○ 협약서는 협상서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식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협상 같은 개념입니까?

〈○○○ 주무관〉

○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우선협상자하고 절차상 먼저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어차피 앞에 있는 ◇◇◇도 협상이든 협약서든 체결을 했을 테고, 내용이 특별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협상서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 주무관〉

○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협상서를 보시면 기존 수탁업체가 계약해지 이후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둘이 경쟁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 계약을 해지를 한 상태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문서마다 다 이렇게 정보공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협상서도 공개를 해 달라 했던 것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협약을 맺은 업체 사업계획의 제목이나 굵직한 내용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물류플랫폼화 사업이나 거점물류사업은 기존업체에서 수행하던 것과는 다른 사업이고, 수탁업체 내부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양 업체 간의 싸움에 서울시가 개입하는 애매한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공개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

○ 저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협상서를 보면 협상결과의 수용, 수용 불가, 조건부 수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수용이고 불가인지?

〈○○○ 주무관〉

○ 이것은 협상하기 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을 수탁업체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최종협상서에는 수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이 협상서(안)의 협상내용이 협의를 통해서 작성된 안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작성 후에 발송한 내용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주무관〉

○ 서울시가 시설, 장비를 임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주도는 시가 합니다. 우리가 협상(안)을 제시하면 수탁업체에서는 협상안을 검토해보고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위원〉

○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서울◎◎◎협동조합의 내부적인 정보나 내부경영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줄 때 서울시의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 주무관〉

○ 이 협상서(안)이 우선협상대상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위원〉

○ 그러니까 물류센터 운영에 관해서 대상 조합이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애초에 조합의 의견이 일단은 기본전제로 깔려있다라는 것이죠?

〈○○○ 주무관〉

○ 첫 번째로 깔려있죠. 거기에서 서울시 의견을 덧붙인 것이고, 그 합의과정에 협상서(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위원〉

○ 이 협상서(안)이 결과적으로는 수용이 됐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면 수용이 됐다라는 사실을 현재 청구인은 당연히 알고 있어서 이 안이 의사결정의 중간단계에서의 안이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이 된 안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겁니까?

〈○○○ 주무관〉

○ 최종협상서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청구인도 협약이 완료된 것도 알고

있고, 또 기존 협약서로 공개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 협상서 말고 협약서 말씀이시죠?

〈○○○ 주무관〉

○ 네.

〈○○○ 위원〉

○ 협상서의 내용이 협약서에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었죠?

〈○○○ 주무관〉

○ 그렇습니다. 협상서의 내용이 협약서에 전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류플랫폼화, 거점물류 이런 운영 세부실행계획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협약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서울시와 협동조합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의사의 합치를 봐서 계약이 체결되면 지금 체결되는 계약이 협약서 하나입니까? 아니면 협상서도 별개의 계약인 겁니까? 협상서에 합의가 되면 사업계획서를 수정을 해서 이 협상서 내용들을 다시 제출합니까?

○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그냥 협상의 내용일 뿐이고, 이 협상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사업계획서와 협약서를 재수정해서 최종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협상서(안)이 또 하나의 계약의 문건으로 남아서 이것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무관〉

○ 협상서도 서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 위·수탁협약에 일부로 들어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연초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 위원〉

○ 이것도 하나의 특약사항 정도의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에 다 빠져있어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행해야 되고,

〈○○○ 주무관〉

○ 그렇습니다.

〈○○○ 위원〉

○ 아까 물류플랫폼하고 거점물류 이 부분이 일종의 영업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들입니다. 물류플랫폼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거점물류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영업사항일지 몰라도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아이디어 차원인데 이것이 왜 공개되면 안 됩니까? 경쟁업체가 이것을 가지고 저 업체의 영업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 주무관〉

○ 경쟁사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

○ 이것은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물류나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 위원〉

○ 담당 부서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건 정보공개 청구는 말하자면 수탁사에서 협약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류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은 요즘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 이것이 특별한 비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현직원 고용승계 및 인력배치계획, 재고상품 인수여부를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주무관〉

○ 서울시는 고용안정을 위해서 위·수탁협약상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민간위탁조례에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지시를 했는데, 전체 인원 26명 중 4명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기존에 업체 쪽에서 일하십니다.

〈○○○ 위원〉

○ 재고 상품 인수과정이나 시설장비현황 인수인계 과정에서 별다른 것은 없습니까?

〈○○○ 주무관〉

○ 재고상품은 전부 기존 수탁업체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인수를 한 것이 없고요. 시설장비 인수인계는 어제부로 완료를 했습니다. 고객리스트 같은 경우는 법적인 다툼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는 자사의 영업비밀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는 서울시 자산이기 때문에 제출을 요청하고 있어서 다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협약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하실 예정입니까?

〈○○○ 주무관〉

○ 아직 안 했고요, 비공개 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이 건 관련해서 지금 ◎◎◎ 쪽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하신 것이 있습니까?

〈○○○ 주무관〉

○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이것을 7호에 의해서 부분공개를 하셨는데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서울시의 생각이네요?

〈○○○ 주무관〉

○ 네.

〈○○○ 위원〉

○ 상품수수료율 7%, 3년 기간 이런 것은 이 계약과 관련해서 공지가 되거나 공고가 있었던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협상의 결과인 겁니까?

〈○○○ 주무관〉

○ 수수료율 7%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청구자하고 계약했을 당시에는 6%까지

허용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7%까지로 상향시켜준 것입니다.

〈○○○ 위원〉

○ 시 내부에 협상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은 충족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서를 만들 때 최소한 수탁업체가 지켜야 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기준이 있어야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위·수탁협약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조례에 기본틀이 있습니다. 기본틀이 있는데 협약하는 업무 특성상 똑같은 틀이 될 수는 없다 보니 기본틀에다가 덧씌워 나가는 것이죠.

〈○○○ 위원〉

○ 그러니까 협상을 사전에 하는 것이 이 정도만 양해가 되면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협약에서 다 수용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까?

〈○○○ 주무관〉

○ 협상서는 협상대로 진행을 했고, 이 협상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협약서에 포함을 해서 협약은 또 따로 가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협약에서 이것을 수용 못하겠다 하면 결렬이 되는 것입니다. 별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것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돼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상서만 놓고 봤을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고 제목 정도 따와서 요약 정리한 것으로 보여서 구체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어떻게 침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점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 주무관〉

○ 협상서는 공공기관인 서울시와 민간인 ◎◎◎협동조합 간에 이루어진 사적인 계약으로 보자면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

○ 이것은 사적인 계약이 아니라 서울시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이고, 서울시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가 원칙이죠. 특별히 비공개할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주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을 넘지 않을 것, 마진율은 7%를 넘지 않는 범위 내' 이 수치는 그냥 협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따로 기준이 없는 것이죠?

〈○○○ 주무관〉

○ 기존업체들이 영업을 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한 수치입니다. 기존 ◇◇◇조합이 영업을 했을 때 누적적자가 26억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었고, 마진율이 적다라는 이의제기를 한 바 있어서 7%로 상향을 시킨 겁니다.

〈○○○ 위원〉

○ 40%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황을 봐서 40%로 한 것인지.

〈○○○ 위원〉

○ 상황을 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 저는 굳이 영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이 두 수치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진율 같은 것은 나름대로 영업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것일 것 같고, 40%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외 나머지는 그냥 보완하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영업하고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주무관〉

○ 물류플랫폼하고 거점물류, 이것은 제목만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고 경쟁사에서 유추 가능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저는 7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 업체의 영업적 노하우나 영업적 어떤 비밀,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당이 안될 것 같고,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제9조제1항 제5호에 '입찰계약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될 여지는 있었는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5호 단서조항에서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정말 협상의 기술과 노하우와 관계가 있어서 비공개를 했더라도 협상이 완료가 되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청구인은 제3자로서 이 협상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시하기 위한 측면이라면 이미 협상이 완료가 됐으니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물류플랫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보면 '저 기업은 물류플랫폼을 쓰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 위원〉

○ 마진율 7% 말씀하셨는데 마진율을 상향조정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 주무관〉

○ 이것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시의 민간위탁금 예산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 위원〉

○ 그러면 마진율을 7%로 상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주무관〉

○ 조합이 도매업체로서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떼와서 골목수퍼에 물건을 공급할 때 7%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 위원〉

○ 7%까지 남겨도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개가 원칙이고, 특별히 비공개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이 협상서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

○ 저 역시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 주무관〉

○ 알겠습니다.

〈○○○ 위원〉

○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집계 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 전원이 이의신청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

로 본 안건은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4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안번호 2018-5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2017년 11월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비정산비) 지급 관련 생활임금 적용시 추가비용 산출금액 등

※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5호 자원순환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소관부서 팀장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입니다.

〈○○○ 주무관〉

○ 자원순환과 주무관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5호 자원순환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설명드

리겠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11월분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비정산비 지출 결재문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는 입금은행, 계좌번호, 통장사본, 생활임금 적용시 추가비용 산출금액에 대해서는 공개 시 새생활의 비밀 또는 자율을 침해하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결정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생활임금 적용으로 추가된 금액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팀장님은 방금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팀장〉

○ 말씀하신 대로 직무별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특정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개인의 수입구조가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심위원이신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생활임금 금액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통장사본은 별도로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비용 산출금액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문제로 되는 것은 첫 번째 표를 이야기하

시는 것이죠?

○ 그러니까 생활임금은 다 똑같이 적용되고, 더군다나 금액도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이고, 1번 표에서 각 직급별, 직위별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비공개 사유로 되어 있는 겁니까?

〈○○○ 팀장〉

○ 네.

〈○○○ 위원〉

○ 현재 비용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때 추가비용이 얼마 든다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부명세로 지금 표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특별히 그 외에 이 표를 만들어서 제출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 주무관〉

○ 저희 자원회수시설이 4개 있다고 했는데 위탁사마다 비정산금 청구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들어왔었는데 그 때는 청구서류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은행정보만 제외하고 다 공개했습니다.

〈○○○ 위원〉

○ 만약에 표1에서 홍보요원, 미화, 이렇게 ‘구분’으로 해서 두고 있는 부분을 공

란으로 했을 때, 그때는 어떨까요?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을까요?

〈○○○ 팀장〉

○ 저희는 맨 뒤에 총계 부분은 공개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에 인원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지급된 내용란에 대해서는 가리고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4개의 자원회수시설을 협약을 맺어서 정산비와 비정산비 지출내역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그 자료를 받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들어오는 양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체적인 자료를 줌으로 해서 위탁업체에 미칠 파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는 빼고 총계 부분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선 '구분' 부분은 바로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인원'도 한 명인 데가 많기 때문에 습니다. 인원을 보면 누구인지 금방 나옵니다.

〈○○○ 위원〉

○ 기술인력 같은 경우에는 1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1명이라 하더라도 누구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 기술인력이 5명인데 급여기준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 팀장〉

○ 예를 들어서 ‘홍보요원 반장’이라든가,

〈○○○ 위원〉

○ 그것도 지워버리면 되는 것이죠. 앞에 것을 지운 다음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주무관〉

○ 참고로 지난 10월 달 비정산비를 요청해서 저희가 똑같은 내용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의신청이 없으셨다가 11월 달 비정산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 위원〉

○ 여기서 이의신청한 자료는 이 밑에 표 생활임금 적용 전·후 이것만 이의신청을 했으니까 이것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구분’을 지우고 ‘인원’을 안 지웠을 때 개인신상이 노출은 안 되죠?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한 추가금액은 수탁업체에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생활임금

시급이 8,197원으로 바뀌면 다 연관되어 있는 수치니까 기본급이 바뀌고, 연장수당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의신청한 취지에 의한다면 인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원과 시급하고 뒤에 계산된 이표가 공개가 된다면 수탁업체에서 생활임금을 반영했을 때 이 계산을 올바르게 했는지, 자기네들도 엑셀이나 이런 것을 돌려봐서 계산을 한번 해볼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왜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나쁜 취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니까 사실 생활임금이 적용됐을 경우에 퇴직급여 충당금,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에 대해서 사실 투명하게 계산이 되고 있다라고 공개하는 것이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아서 계산하는 이 계산방법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프로그램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만 공개가 안 된다면 이것이 영업상 비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식별 가능성만 없애준다면 사실 공개된다고 해서 크게 서울시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팀장〉

○ 참고로 업체가 작년 말로 노원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는 업체는 이전 업체이고 2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떠나가는 업체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왜 자료를 주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별로 약간씩 요금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탁업체도 감안을 해 주고 실무자도 감안해 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보면 한번 자료를 공개하면 4개의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이고 청구의 범위가 계속 확대가 되는데 위원회에서 어느 범위를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공개하는 데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표1의 종래의 지급했던 지급기준이 영업상 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주무관〉

○ 이것이 근로계약서상에 임금단가입니다. 제수당 같은 경우는 수당 단가나 이런 것은 임금협상을 하면서 각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분'은 좀 비공개로,

〈○○○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시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부분이 영업하고 관련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에 판단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주무관〉

○ 이것은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이고, 구청 환경미화원의 경우도 보통 총계만 보통 공개를 합니다. 회사측이나 노동자측에서는 노사가 임금협상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

○ 총액만 공개하면 사실은 그런 문제는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분'이나 '인원'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고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급이나 수당을 얼마를 주는지가 공개되는 것이 어찌 보면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팀장〉

○ 시에서는 정산의 일정 기준만 정해주고 수탁업체와 근로자 간에 별도계약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적인 계약서를 시에서 공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것이 전체공개가 되어버리면 개별 근로계약이 공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네요.

〈○○○ 위원〉

○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같은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급이 정해지면 당연히 그것은 계산되는 것이겠죠.

〈○○○ 위원〉

○ 시급이 6,030원부터 8,094원까지 범위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근로자들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구분'과 '인원'을 비공개로 해 버린다면 사실 이것을 받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 수탁업체는 노동자들과 6,030원부터 8,094원까지 계약을 체결했겠구나' 정도의 정보만 알 수 있고, 어떤 직급에 어떤 시급을 줬고 어떻게 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탁업체의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는 경영상 비밀처럼 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팀장〉

○ 저도 그 생각입니다.

〈○○○ 위원〉

○ 인원은 비공개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총액에서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 위원〉

○ 그러네요.

〈○○○ 위원〉

○ 4개의 자원회수시설에서의 임금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까?

〈○○○ 주무관〉

○ 조금 많이 납니다. 업체 선정시 이전에는 가격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이었는데, 1점도 안 되는 것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 중 노원이 제일 열악한데 입찰가의 60% 정도로 서로 치열하게 낙찰이 되었고, 요즘에는 다 생활임금 이상 금액으로 이렇게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원도 1월 말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생활임금 이상 금액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팀장〉

○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정산비하고 비정산비인데, 업체가 순수하게 자기네가 관리할 수 있는 돈은 비정산비입니다. 비정산비의 가장 중요요인은 인건비로, 인건비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가 위·수탁할 때 입찰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로 공개됐을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업체가 향후 입찰시에도 지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지금 보통은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 팀장〉

○ 3년 단위로 합니다.

〈○○○ 위원〉

○ 앞으로는 계속해서 생활임금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급은 과거자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업체가 다시 이 응찰을 하게 될 때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급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 팀장〉

○ 그런데 이것이 외부로 나가면 그간 근로자한테 줬던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다른 부분이 파생될 수는 있죠.

〈○○○ 위원〉

○ 당연히 그것은 권리·의무관계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줄 것을 안 줬으면 게워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생활임금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기존업체가 그동안 저 시급 기준으로 경영을 해 왔던 노하우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네요.

〈○○○ 위원〉

○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되지 않는 데가 있습니까? 생활임금을 굳이 여기에서 확인하려는 청구인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노조활동 관련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당한 정보를 공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생활임금 적용 전 금액하고 지급 후 금액하고 표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뒷부분은 생활임금이 다 똑같이 적용됐으니까 문제 없고, 엄밀하게 따지면 청구인이 이 표 자체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구취지를 보면 두 번째 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표에서 '구분' 정도를 빼고 첫 번째 표를 공개 안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

○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첫 번째 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죠?

○ 계산을 하자면 적용시 추가소요금액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표를 공개한다면 첫 번째 표를 충분히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네요.

〈○○○ 위원〉

○ 청구인으로 봐서는 사실 두 번째 표만 있어도 되는 것이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첫 번째 표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지금 제일 민감한 부분이 첫 번째 표에 시급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려 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리는 것하고 똑같아집니다.

〈○○○ 위원〉

○ 그런데 두 번째 표를 보면 첫 번째 표를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표를 공개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 첫 번째 표를 공개하는 것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위원〉

○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표에서 구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구분만 제외하면 공개하고 두 번째 표를 공개하는 것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지금 봤을 때 두 번째 표에서 '구분' 빼고 공개하자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 위원〉

○ 그럼 첫 번째에도 '구분'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사실은 청구한 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두 번째 표를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첫 번째 표에 대해서는 판단을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첫 번째 표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한 것만 보면 생활임금 적용시 추가소요금액만 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일단 저는 그냥 표 둘 다 공개를 하되 구분만 지우는 것으로 해서 일부공개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

○ 저는 청구인이 요청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는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표에서 '구분'은 지우고 공개하는 것으로,

〈○○○ 위원〉

○ 3은 두 분 다 공개 의견이시죠?

〈○○○ 위원〉

○ 네.

〈○○○ 위원〉

○ 네.

〈○○○ 위원〉

○ 지금 근거로 6호하고 7호의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구분’만 지우시면 식별 가능성이 없어져서 6호 사유가 없어질 것 같고,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1, 2는 ‘구분’을 지우고 표3은 공개의견입니다.

〈○○○ 위원〉

○ 쓰레기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공부분에서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만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데이터가 다 필요하겠지만, 이번 청구는 청구인의 권리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요청한 생활임금 적용시 추가비용 산출금액은 공개하고, 나머지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

○ 그럼 ○○님 의견은 3번은 공개고, 그러면 1번은 판단 자체를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2번은 어떻습니까?

〈○○○ 위원〉

○ 표 2중 ‘구분’ 부분은 비공개, 나머지 뒷부분은 임금생활 적용시 추가소요금액, 이 부분만 공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

○ 담당주무관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죠.

〈○○○ 팀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분’은 저희가 보면 그것이 누구인가 특정인을 알 수 있는 범위가 되니까 ‘구분’은 제외되고, 말씀하신 대로 뒤에 생활임금 적용 후 전체 이 표의 공개에 대해서 업체하고 또 한 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구분’에 있어서 경비 교대 4명, 경비 주간 1명,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떻게 배치해야 된다는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주무관〉

○ 저희가 제안을 받을 때 초급기술자 몇 명, 경비 몇 명 이렇게 인력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업체가 계약된 금액 내에서 경력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노사협약을 통해 단가를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 팀장〉

○ 그렇습니다.

〈○○○ 팀장〉

○ 처음에 저희 생각은 인원까지 생각해서 인원을 보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명이 있는 데가 있어서 인원을 보면 ‘어느 직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런데 한 명이 너무 많아서요. 한 명 있는 직군이 하나둘 정도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것이 기술인력 교대로 해서 같은 항목으로 인원수가 나누어져 있어서 특별하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 위원〉

○ 기술인력이 십 몇 명인데요, 그 분들이 아마 연차별로 시급이 몇 십 원씩 달라서 임의적으로 7명, 2명, 1명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 위원〉

○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개를 하는데, 다만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나 영업상에 비밀에 관련된 것은 공개의 예외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료는 다 공개하는데 공개했다가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구분'을 삭제하고, 영업상의 비밀과 관련이 있으니까 시급을 삭제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빼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출발점은 다 공개한다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업계에서는 저 정도 일을 하면 얼마 정도 받는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렇게 하시죠.

〈○○○ 위원〉

○ 최종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번 건은 부분공개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적용전 부분은 요청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비공개가 아니라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 2번, 3번이 이의신청 대상인데 2번, 3번과 관련해서 2번 표에 대해서는 '구분'만 지우고 공개하는 것으로, 그리고 3번은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집계 결과 참석위원 5명 중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결론으로는 4명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의신청 건을 부분인용 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5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